

과학기술처 및 산하기관 대민업무

과학기술처를 비롯 산하기관들의 대민업무를
여기에서 간략하게 소개한다. (편집자 주)

科學技術處(長官·李正五)는
韓國의 과학기술행정의 종합행
정기관으로서 주요 대민업무는
① 기술용역업등록 ② 외국용
역발주승인 ③ 연합용역업체형
성승인 ④ 방사성 동위원소 및
방사선 발생장치 사용허가 ⑤
각종 면허 및 시험업무 ⑥ 전
자계산조직 도입계획 조정신청
등이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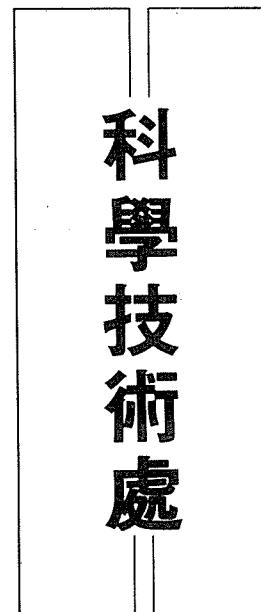
기술용역업등록

◎ 의무등록 : 의무등록에 있
어서는 기술용역업을 영위하고
자 하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
에 따라 종류별로 과학기술처
에 등록하여야 하며, 등록을 하
지 아니하고 용역업을 영위하
는 자는 제재를 받게 되어 있
다.

◎ 등록기준 : 등록기준은 산
업설비 용역업, 종합건설기술
용역업, 전문기술용역업, 개인
기술용역업 등 각 영업별로 일
정규모 이상의 자본금과 기술
인력 및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
있다.

◎ 등록접수기간공고 : 등록
접수기간은 매년 1회 이상 관보
에 공고하고 있다.

◎ 등록증교부 : 등록된 업체
에 대하여 등록증을 교부하고
있다.



할 자가 파견할 기술자의 명단
2부

◎ 처리기간 : 30일 (다만 용
역대가 100만불 이상인 경우에
는 산업설비용역심의 위원회의
심의를 거쳐 승인 한다.)

연합용역업체 형성승인

◎ 연합용역업체형성 : 대형
용역 또는 2종 이상의 용역업
자가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
얻어 연합용역업체를 형성 공
동으로 그 용역을 수행한 경우

◎ 신청 : ① 연합용역수행계
획서 1통 ② 참가자동의서 각 1
통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되어
있다. (수수료는 없으며, 처리기
간은 15일)

외국용역업발주승인

◎ 내용 : 국내업체가 외국으
로부터 기술용역을 도입할 경
우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
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아
야 하며, 승인을 받지 않으면
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다.

◎ 구비서류 : ① 사업계획서
2부 ② 용역계약서 사본 (국영
문) 각 2부 ③ 대리권을 증명
하는 서류 2부 ④ 용역을 제공
하는 서류 2부

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허가

◎ 내용 : 방사성 동위원소
또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
고자 하는 자, 또는 방사성 동
위원소의 판매사업을 하고자하
는 자는 과학기술처장관의 허
가를 받아야 하며, 허가받은 사
항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.

(다만, 100밀리큐리 이하의 밀봉된 방사성 동위원소 사용은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다.)

◎ 허가기준 : 사용시설 등의 위치·구조 및 설비가 법령에 정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고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또는 방사선 발생장치에 의한 방사선 장해의 우려가 없어야 한다.

◎ 검사 :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자는 검사를 받아야 하며, 검사결과 미비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.

각종면허 및 시험업무

◎ 면허 : 원자로의 운전이나 핵연료 물질,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 발생장치의 취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처장관의 면허를 받은자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.

◎ 면허구분 : 면허구분은 ① 원자로 조종감독자 면허 ② 원자로 조종사 면허 ③ 핵연료 물질 취급감독자 면허 ④ 핵연료 물질취급자 면허 ⑤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 일반면허 ⑥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 특수면허 ⑦ 방사선 취급 감독자 면허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.

◎ 면허시험 : 위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처장관이 시행하는 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.

◎ 시험시행 :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, 그 경우 시험시행일시 및 장소를 시험실시전 30일까지 공고 한다.

◎ 응시자격 : 학력, 경력과

교육훈련 및 훈련수료등 일정한 자격은 없다.

전자계산조직 도입계획 조정신청

◎ 내용 : 과학기술처 장관은 전자계산 조직의 도입, 이용기술의 개발, 정보처리 요원의 양성에 관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조정하며, 중형이상(공공기관은 소형이상)의 전자계산조직을 도입(신규도입 및 추가, 대체도입 포함)하고자하는 자는 그 도입계획에 관하여 미리 과학기술처장관의 조정을

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다.

◎ 신청 구비서류 : 신청구비서류는 ① 신청서 ② 도입계획서 ③ 가계약서 사본 등이다.

◎ 조정절차 : 전자계산조직 위원회 심의 및 상공부장관과 협의조정 한다.

◎ 조정기준 : 조정기준은 ① 도입의 필요성 및 경제성 ② 사전준비 및 요원확보 ③ 기존전자계산조직과의 공동활용 가능성여부 ④ 기종설정의 적정성 ⑤ 국산대체 가능성여부 ⑥ 정비보수 체제 및 계약내용의 합리성 ⑦ 정부 전자계산조직 표준화계획에의 부합여부 등이다.

中央氣象台

中央氣象台(台長·孫亨珍)는 韓國의 氣象行政에 대한 中央行政機關으로서 주요 대민업무는 ① 기상관측기 설정 ② 기상증명 ③ 기상자료열람 ④ 자동예보응답기 설치운용 등이 있다.

기상측기 검정

◎ 의무검정 : 기상업무법에 의하여 기상관측을 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반드시 중앙기상대가 설정한 측기를 사용해야 하며, 동검정에 합격되지 아니한 기상측기를 사용한자는 제재를 받게 되어 있다.

◎ 대상측기 : 대상측기는 온도계·습도계·우량계·풍향풍속계·기압계 등이다.

◎ 검정절차 : ① 측기제작자명, 제작번호, 제작년월일을 기재한 소정양식에 서명날인하고, 수수료는 정부수입 인지로 납부 신청하면, ② 검정 소요기간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에 처리하고, ③ 검정결과 합격품에 대하여는 별도로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증명 발급(검정수수료의 3배에 해당하는 수수료납부신청)한다.

◎ 검정유효기간 : 5년(다만, 우량계 및 설량계는 10년, 라디오존데는 1년)

기상증명

◎ 증명서 발급 : 일반인의 의뢰에 의하여 기상·지상 및 수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증명 또는 감정을 수행하고 있다.

◎ 발급기관 : 중앙기상대장이 발급함을 원칙으로 하나 지방기상대, 측후소, 관측소에서 판할구역과 해역에 대한 기상자료에 한하여 기상증명을 발급하며, 예보에 관한 기상증명은 판할 예보관서에서 발급하고 있다.

◎ 절차 : 기상증명원(소정양식) 1통과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신청하며, 반드시 인장을 지참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. (처리기간 : 3일)

기상자료연람

◎ 의의 : 우리나라 전 기상관서에서 수집된 각종 기상자료를 분석하여 일별, 월별, 요일별 및 각 지방별로 구분·정리하여 매월 기상월보와 매년 기상년보를 발간하며, 이를 자료와 함께 보관중인 각종 기상

◎ 보관자료 내역

자료명	보관년도
일기	1909년 - 1982년
기상월표 원부	1904년 - 1982년
기상년표 원부	1931년 - 1982년
항공기상월표 원부	1961년 - 1982년
고층기상월표 원부	1965년 - 1982년
북한기상월표 원부	1973년 - 1982년
누년원부	1916년 - 1960년
기상월보	1904년 - 1940년 1960년 - 1982년
기상년부	1904년 - 1940년 1951년 - 1981년
분실단기 평년값	1972년 - 1976년
한국기후표(제1권)	1931년 - 1960년 1951년 - 1980년

증명에 관한 국내외의 자료를 연중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.

◎ 절차 : 별도의 구비서류나 수수료는 없으며, 근무시간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다.

자동예보응답기 설치운용

◎ 전화예보 : 연중 누구든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화를 이용하여 기상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을 비롯하여 부산·광주·대구에 자동예보응답 전화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.

◎ 설치지역 및 이용전화번호

지역	설치장소	이용전화
서울	중앙기상대	722
		723 0365
		724 ~0369
		725
		부산 부산지방 44 0365
광주	기상대	45 ~0369
	광주지방	8-0365
대구	기상대	~0369
	대구측후소	952-0365 ~0369

◎ 예보문의 : 자동예보 응답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지방측후소에서도 해당국번에 0365번을 이용하면 언제든지 예보문의에 응하고 있다.

國立科學館

國立科學館(館長·尹永勛)은 科學技術의 보급장려를 위하여 설치된 기관으로서 주요 대민업무는 ① 과학기술전시 보급 ② 과학전람회 개최 등이 있다.

과학기술전시보급

◎ 상설전시실 운영 : 과학기술의 보급을 위하여 상설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다.

◎ 전시물 : ① 본관에는 과학기술의 기본원리 및 그 응용에 관한 전시물 9개분야 175주제를 전시하고, ② 산업기술관에는 주요 중화학공업의 공장모형, 제품생산공정등 7개분야 28주

제를 전시하며, ③ 컴퓨터 전시장에는 컴퓨터 및 컴퓨터에 관한 전시를 하고 있다.

◎ 관람료 : ① 대인은 100원, ② 소인은 50원이며, ③ 단체 입장시에는 할인을 해주고 있다.

◎ 공개과학교실 운영 : 전국 초·중·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공개과학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, 학습내용으로는 ① 과학동산 ② 과학실험실습교실 ③ 컴퓨터교실 ④ 과학모형 공작교실 ⑤ 주말과학과정 등이 있다.

◎ 과학동산은 청소년 학생들에게 학교외 과학활동을 통하여 과학에 대한 흥미유도로 과학적 탐구력을 배양하고 미래과학자로서의 꿈을 키워주기 위

한 과정이다.

○ 과학실험실습교실은 방학기간중 중학생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실험실습과 모형공작을 지도 학생들의 교외과학활동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과정이다.

○ 컴퓨터 교실은 주말 및 방학기간중 중학생을 대상으로 마이크로 컴퓨터 기초이론 및 실습, 프로그램 입문등의 지도를 위한 과정이다.

○ 과학모형공작교실은 매주 토·일요일 국민학교 4-6학년에게 과학상자 조립공작을 지도하기 위한 과정이다.

○ 주말과학경연회에서는 매주말 초·중·고생을 대상으로 국내 저명과학자를 초청,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 강연실시 및 과학영화를 상영하고 있다.

과학전람회 개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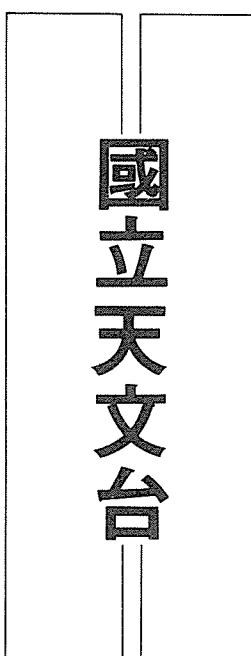
◎ 목 적 : 과학기술진흥과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위한 풍토조성을 목적으로 전국과학전람회를 비롯하여 전국학생발명품 경진대회, 특별전람회 또는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.

◎ 출품부문 : 물리, 화학, 생물, 지구과학, 농수산 및 공업분야 등이다.

◎ 출품자의 구분 : ① 학생부는 초·중·고교학생 및 과학반 ② 교원 및 일반부는 초·중·고교원 및 대학생, 일반으로 하고 있다.

◎ 시 상 : 대통령상, 국무총리상 및 특상, 우수상, 장려상, 지도교사상, 특별상 등이 있으며, 국무총리상 이상을 수상한 자(지도교사 포함)는 해외시찰의 특전이 부여 된다.

◎ 초대작품 전시 : 과학전에 대한 과학계의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고 연구기관의 연구성과를 소개함으로써 과학도들의 연구 및 탐구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과학전에 정부출연연구기관, 민간기업연구소 및 대학 연구소의 찬조출품을 권장하고 있다.



國立天文台(台長·閔英基)는韓國의天文에 관한國立機關으로서 주요 대민업무는 ① 음·양력대조증명 ② 관측시설의 사용등이 있다.

음력·양력

대조증명

◎ 증명서 발급 : 음·양력 대조증명이란 음력 몇월 몇일이 양력 몇월 몇일임을 확인 발급하는 증명서로서 호적정정 등을 위해 필요하다. 그 외에도

신청에 의하여 일·출입 시각 증명도 하고 있다.

◎ 신 청 : 음·양력 대조증명 발급신청은 ① 직접출원 ② 우편접수 ③ 전화문의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.

① 직접출원 : 신청인 인장, 수수료(정부수입인지 50원짜리 2매 첨부)가 필요하다.

② 우편신청 : 전국 우체국에 비치되어 있는 “민원우편 신청서”를 이용하여 발급 받고자 하는자의 음·양력 생년월일, 성명,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국립 천문대로 신청(정부 수입인지 50원짜리 2매)하도록 되어 있다.

③ 전화문의 : 단순히 음력일자를 양력일자로 환산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화 567-4197로 문의하면 즉시 회답하고 있다.

◎ 기 타 : 우리나라에는 현재 양력을 공식력으로 채택하고 있으며, 양력 사용을 적극 생활화하기 위하여 양력을 음력으로 환산하는 증명서 발급은 하지 않는다.

관측시설의 사용

◎ 시설사용 : 천체의 관측연 구등을 위하여 천문대의 관측시설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.

◎ 신 청 : 천문대의 관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그 사용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관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교육기관 기타 천문학에 관한 연구단체인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.